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43호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0. 12. 31. 지침 제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는 청소년참여기구로써,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② “청소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의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1년 이상 연임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연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회는 원활한 조직구성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기관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 중인 청소년은 지역사회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4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3.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7조(위원회 역할)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도자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 지침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부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⑦ 각 위원은 회의에 안건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활동으로 한다.
 -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 3. 기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 전달
 - 4. 지역 내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 및 기관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8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련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수렴 및 반영)** ① 위원회는 연2회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동내용 및 의견을 보고·제안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2항에 따라 기관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기관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양한 활동 등에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제12조(활동지원) 문화의집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지침 제43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